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2496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06.(수)	2026.05.18.(월)	2026.05.19.(화)	2026.05.20.(수)	2026.05.28.(목)	2026.05.29.(금)~ 2026.06.02.(화)	2026.06.09.(화)~ 2026.06.11.(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illstate-hec.co.kr/s/guweol>)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06.(수)**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18.(월)	2026.05.19.(화)	2026.05.20.(수)	2026.05.28.(목)	2026.05.29.(금) ~2026.06.02.(화)	2026.06.09.(화) ~2026.06.11.(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공급계약 계약 체결 시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불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5.28.)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청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과 - 15848호(2026.05.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최고 39층 4개동, 일반분양 총 496세대
 [특별공급 217세대(기관추천 37세대, 다자녀가구 48세대, 신혼부부 85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3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47	1	084.9907A	84A	84.9907	35.5111	120.5018	58.6568	179.1586	15.8907	248	25	24	57	8	22	136	112	8
	2	084.9971B	84B	84.9971	35.7465	120.7436	58.6613	179.4049	15.8919	124	12	12	28	4	11	67	57	4
	3	101.9965	101	101.9965	41.6199	143.6164	70.3935	214.0099	19.0703	124	-	12	-	2	-	14	110	4
	합 계									496	37	48	85	14	33	217	279	16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청약시)	084.9907A	084.9971B	101.9965
약식표기(건본주택 등)	84A	84B	101

※ 건본주택,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타입)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홈페이지는 타입(약식표기)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세대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 하지 않음)
- ※ 특별공급 배정 세대 중 청약 미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7-02-26	2027-10-28	2028-06-28	2029-02-28	2029-10-29	2030-04-29		입주시	
84A	101동 1호 2호, 102동 1호 2호, 103동 2호, 104동 1호	5층	6	329,539,700	433,460,300	-	763,000,000	10,000,000	28,15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67,050,000	
		6층	6	332,994,900	438,005,100	-	771,000,000	10,000,000	28,55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269,850,000	
		7층	6	340,337,200	447,662,800	-	788,000,000	10,000,000	29,4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75,800,000	
		8층	6	347,679,500	457,320,500	-	805,000,000	10,000,000	30,25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281,750,000	
		9층	6	354,589,900	466,410,100	-	821,000,000	10,000,000	31,05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287,350,000	
		10-12층	18	361,932,200	476,067,800	-	838,000,000	10,000,000	31,9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293,300,000
		13-15층	18	365,387,400	480,612,600	-	846,000,000	10,000,000	32,3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96,100,000
		16-21층	30	369,274,500	485,725,500	-	855,000,000	10,000,000	32,75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85,500,000	299,250,000
		22-27층	36	372,729,700	490,270,300	-	863,000,000	10,000,000	33,15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302,050,000
		28-33층	36	376,616,800	495,383,200	-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34-36층	12	380,072,000	499,928,000	-	880,000,000	10,000,000	34,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308,000,000	
	37-39층	12	383,527,200	504,472,800	-	888,000,000	10,000,000	34,4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88,800,000	310,800,000	
	103동 1호, 104동 2호	5층	2	322,629,300	424,370,700	-	747,000,000	10,000,000	27,35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261,450,000
		6층	2	326,516,400	429,483,600	-	756,000,000	10,000,000	27,8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264,600,000
7층		2	333,426,800	438,573,200	-	772,000,000	10,000,000	28,6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70,200,000	
8층		2	340,337,200	447,662,800	-	788,000,000	10,000,000	29,4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75,800,000	
9층		2	347,679,500	457,320,500	-	805,000,000	10,000,000	30,25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281,750,000	
10-12층		6	354,589,900	466,410,100	-	821,000,000	10,000,000	31,05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82,100,000	287,350,000	

		13-15층	6	358,477,000	471,523,000	-	830,000,000	10,000,000	31,5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290,500,000		
		17-21층	10	361,932,200	476,067,800	-	838,000,000	10,000,000	31,9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83,800,000	293,300,000	
		22-27층	12	365,387,400	480,612,600	-	846,000,000	10,000,000	32,3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96,100,000	
		28-33층	12	368,842,600	485,157,400	-	854,000,000	10,000,000	32,7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298,900,000	
84B	101동 3호, 102동 4호	5층	2	338,358,720	445,641,280	-	784,000,000	10,000,000	29,2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274,400,000	
		6층	2	341,811,360	450,188,640	-	792,000,000	10,000,000	29,6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277,200,000	
		7층	2	349,579,800	460,420,200	-	810,000,000	10,000,000	30,5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83,500,000	
		8층	2	356,916,660	470,083,340	-	827,000,000	10,000,000	31,35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89,450,000	
		9층	2	364,253,520	479,746,480	-	844,000,000	10,000,000	32,2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95,400,000	
		10-12층	6	371,590,380	489,409,620	-	861,000,000	10,000,000	33,05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301,350,000	
		13-15층	6	375,474,600	494,525,400	-	870,000,000	10,000,000	33,5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304,500,000	
		16-20층	10	378,927,240	499,072,760	-	878,000,000	10,000,000	33,9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307,300,000	
		22-27층	12	382,811,460	504,188,540	-	887,000,000	10,000,000	34,35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88,700,000	310,450,000	
		28-33층	12	386,695,680	509,304,320	-	896,000,000	10,000,000	34,8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89,600,000	313,600,000	
	34-36층	6	390,148,320	513,851,680	-	904,000,000	10,000,000	35,2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316,400,000		
	37-39층	6	394,032,540	518,967,460	-	913,000,000	10,000,000	35,65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319,550,000		
	103동 4호, 104동 3호	5층	2	331,453,440	436,546,560	-	768,000,000	10,000,000	28,4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268,800,000	
		6층	2	335,337,660	441,662,340	-	777,000,000	10,000,000	28,85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71,950,000	
		7층	2	342,242,940	450,757,060	-	793,000,000	10,000,000	29,65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77,550,000	
		8층	2	349,579,800	460,420,200	-	810,000,000	10,000,000	30,5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83,500,000	
		9층	2	356,916,660	470,083,340	-	827,000,000	10,000,000	31,35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89,450,000	
		10-12층	6	364,253,520	479,746,480	-	844,000,000	10,000,000	32,2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95,400,000	
		13-15층	6	368,137,740	484,862,260	-	853,000,000	10,000,000	32,65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298,550,000	
		17-21층	10	371,590,380	489,409,620	-	861,000,000	10,000,000	33,05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301,350,000	
22-27층		12	375,043,020	493,956,980	-	869,000,000	10,000,000	33,450,000	86,900,000	86,900,000	86,900,000	86,900,000	86,900,000	86,900,000	86,900,000	304,150,000		
28-33층	12	378,927,240	499,072,760	-	878,000,000	10,000,000	33,9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87,800,000	307,300,000			
101	101동 4호, 102동 3호, 103동 3호, 104동	5층	4	397,105,890	519,907,260	51,986,850	969,000,000	10,000,000	38,450,000	96,900,000	96,900,000	96,900,000	96,900,000	96,900,000	96,900,000	96,900,000	339,150,000	
		6층	4	401,613,800	525,809,200	52,577,000	980,000,000	10,000,000	39,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98,000,000	343,000,000	
		7층	4	410,219,810	537,076,540	53,703,650	1,001,000,000	10,000,000	40,05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100,100,000	350,350,000	
		8층	4	419,235,630	548,880,420	54,883,950	1,023,000,000	10,000,000	41,15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102,300,000	358,050,000
		9층	4	427,841,640	560,147,760	56,010,600	1,044,000,000	10,000,000	42,2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104,400,000	365,400,000

4호	10-12층	12	436,447,650	571,415,100	57,137,250	1,065,000,000	10,000,000	43,25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106,500,000	372,750,000
	13-15층	12	440,955,560	577,317,040	57,727,400	1,076,000,000	10,000,000	43,800,000	107,600,000	107,600,000	107,600,000	107,600,000	107,600,000	107,600,000	107,600,000	376,600,000
	16-21층	20	445,463,470	583,218,980	58,317,550	1,087,000,000	10,000,000	44,350,000	108,700,000	108,700,000	108,700,000	108,700,000	108,700,000	108,700,000	108,700,000	380,450,000
	22-27층	24	449,561,570	588,584,380	58,854,050	1,097,000,000	10,000,000	44,85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109,700,000	383,950,000
	28-33층	24	454,069,480	594,486,320	59,444,200	1,108,000,000	10,000,000	45,4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387,800,000
	34-36층	6	458,577,390	600,388,260	60,034,350	1,119,000,000	10,000,000	45,950,000	111,900,000	111,900,000	111,900,000	111,900,000	111,900,000	111,900,000	111,900,000	391,650,000
	37-39층	6	462,675,490	605,753,660	60,570,850	1,129,000,000	10,000,000	46,45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395,15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별, 층별, 라인별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파트 분양대금에 관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유상옵션(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및 운동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명칭, 동 표시, 외관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 및 오타자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해당 법률이 우선합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101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2	-	6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2	-	6	
	장애인	인천광역시	3	2	-	5
		서울특별시	3	1	-	4
		경기도	3	1	-	4
	중소기업 근로자	4	2	-	6	
소계	25	12	-	3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	12	6	6	24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12	6	6	24	
	소계	24	12	12	48	
신혼부부 특별공급		57	28	-	8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4	2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22	11	-	33	
합 계		136	67	14	21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유의사항	<p>■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p>																						

	<p>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 주택형의 한함)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의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예비 순번을 부여 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p> <p>■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p> <p>■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 50%(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 단,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시·도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p> <p>■ ②배점</p> <table border="1" data-bbox="309 630 2136 1492">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서울·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 </tr> </tbody> </table>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서울·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서울·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8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25%;">소득구분</th> <th style="width: 6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위</th> <th style="width: 8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입산·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5.06.(수)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공공택지는 19%) 범위 : 3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 함(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5.06.(수)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지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84B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01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p>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p>■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p>
--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p>본인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p>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p>	<p>-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28.(목) ~ 2026.06.06.(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5.2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접수	2026.05.29.(금)~2026.06.02.(화)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방문예약제 -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홈페이지 (https://www.hillstate-hec.co.kr/s/guweol)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예비 순번 앞순위 우선)	제출 대상 세대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06.) 이후 발급분으로 하기 구비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하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청약(‘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 생략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청약홈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에 한함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기타란에 직접작성)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현대엔지니어링(주))
	○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제외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p>※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p>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p>※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p>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가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 포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 포함)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연락처에 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에 한함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표1]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명(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호봉인 직급자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③ 해당 직장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원본, 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홈택스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 증명원 및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③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금년도 신규 취업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접수장소(견본주택)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① 출산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내역) ②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본인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에 한함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기타란에 직접작성)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현대엔지니어링(주))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복무확인서	배우자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심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		가점제 산정 기준표 본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에 한함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간	방법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6.09.(화) ~ 2026.06.11.(목)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사전 방문예약 후 견본주택 계약 (https://www.hillstate-hec.co.kr/s/guwe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번지)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동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아파트 공급계약 : 시행위탁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및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에 한함 온라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기타란에 직접작성)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현대엔지니어링(주))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온라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제출시 대리인 불가
		○	신분증,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사실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시행위탁자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392-910014-016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기)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약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1031501홍길동')
- ※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람,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392-910014-01604 예금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순위에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투기 적발자 처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단, 특별공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합니다. (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기준에 따릅니다.

- 공급계약서와 관련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공급금액 납부안내 등을 위한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번호 변경 미고지 및 계약자의 휴대폰 수신상태 문제로 인한 SMS 미수신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data-bbox="398 1305 2123 1465">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2025.09.0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수도권 및 규제지역 LTV 축소 등 정부정책, 본인의 대출 부적격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계약자 별로 대출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미신청자 및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5%)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기관과 체결한 일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용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 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 이자납입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7.02.26.	입주시
84A	20,000,000	2,000,000	2,000,000	16,000,000
84B	20,000,000	2,000,000	2,000,000	16,000,000
101	22,000,000	2,200,000	2,200,000	17,60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되는 면적 및 창호 면적, 가구 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타입 및 평형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및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납부함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상부 우수 및 배수배관,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 설비 배관 등의 이유로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창호, 가구, 마감자재 등에 따라 가전기기 및 가구 등의 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 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시행위탁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50%)납부합니다.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392-910014-022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서에 명기)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건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392-910014-02204, 예금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

- 유상옵션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유상옵션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 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 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에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사, 모델, 사양은 품질 및 품귀,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유상옵션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세부 사양 및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설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품목은 타입별로 지정된 마감재가 적용되어, 다른 타입의 마감재로 교차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의 타일/엔지니어드스톤/세라믹/마루/시트판넬 자재 등의 무늬 및 패턴은 불규칙하게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 유/무에 따라 가구, 창호, 마감자재, 조명기기, 배선기기 등의 디자인, 패턴,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평형별, 타입별 품목이 상이하며, 크기, 디자인, 패턴,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이 가능하며 일부 중복 선택 시 설치 기준이나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미선택 시 원하시는 가전기기, 가구 등의 반입 및 설치 등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의 품목과 구성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분 선택하실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설치위치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7.02.26.	입주시		
시스템 에어컨	스탠다드 (냉방 전용)	3실(거실/주방/침실1)	84A/B	5,280,000	528,000	528,000	4,224,000	-
			101	5,750,000	575,000	575,000	4,600,000	-
		5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4A/B	8,820,000	882,000	882,000	7,056,000	-
	6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01	10,320,000	1,032,000	1,032,000	8,256,000	-	
	프리미엄 (냉방+공기청정+UV nano 살균)	3실(거실/주방/침실1)	84A/B	6,580,000	658,000	658,000	5,264,000	-
			101	7,260,000	726,000	726,000	5,808,000	-
5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4A/B	10,700,000	1,070,000	1,070,000	8,560,000	-	
6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01	12,910,000	1,291,000	1,291,000	10,328,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금액은 주택 공급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현재 시스템에어컨 제조사는 LG전자이나 향후 제조사 및 브랜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 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의 설치 개소 및 소요 용량에 적절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박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천장형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시스템에어컨 계약 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구, 환기 설비, 천장 구조, 소방시설물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일부타입 실외기실은 발코니와 별도 분리되지 않아 전열교환기 및 실외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장비로부터 운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공사 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실내기 1대당 1개), 추후 유선 컨트롤러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안방의 벽걸이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마감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7.02.26.	입주시		
조명 고급화	스탠다드	특화조명(디밍/색온도)+13"월패드+AI 음성인식 스위치+거실 우물천장 간접등+주방 라인조명('ㄱ'자형)	84A	5,560,000	556,000	556,000	4,448,000	-
		84B	5,510,000	551,000	551,000	4,408,000	-	
		101	5,770,000	577,000	577,000	4,616,000	-	
	101	6,770,000	677,000	677,000	5,416,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프리미엄	특화조명(디밍/색온도)+13"월패드+AI음성인식 스위치+거실 우물천장 간접등+주방 라인조명('ㄱ'자형)+커튼박스 간접등 +픽처레일	84A	6,620,000	662,000	662,000	5,296,000	-
84B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	
101			7,080,000	708,000	708,000	5,664,000	-	
101		8,090,000	809,000	809,000	6,472,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픽처레일+주방 우물천장 간접등						
아트월 고급화	스탠다드	거실아트월, 아일랜드벽 유럽산 포세린 타일(600*1200) +소파벽·복도벽 시트 판넬	84A	3,370,000	337,000	337,000	2,696,000	-
		거실아트월, 소파벽 유럽산 포세린 타일(600*1200) +복도벽, 주방 팬트리벽 시트 판넬	84B	3,210,000	321,000	321,000	2,568,000	-
		거실아트월, 소파벽 유럽산 포세린 타일(600*1200) +아일랜드벽, 복도벽 시트 판넬	101	3,370,000	337,000	337,000	2,696,000	-
		거실아트월, 소파벽 유럽산 포세린 타일(600*1200) +복도벽 시트 판넬		3,070,000	307,000	307,000	2,456,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프리미엄	거실아트월, 아일랜드벽 유럽산 빅슬랩 세라믹 타일 +소파벽·복도벽 시트 판넬	84A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
		거실아트월, 소파벽 유럽산 빅슬랩 세라믹 타일 +복도벽, 주방 팬트리벽 시트 판넬	84B	6,130,000	613,000	613,000	4,904,000	-
		거실아트월, 소파벽 유럽산 빅슬랩 세라믹 타일 +아일랜드벽, 복도벽 시트 판넬	101	6,440,000	644,000	644,000	5,152,000	-
		거실아트월, 소파벽 유럽산 빅슬랩 세라믹 타일 +복도벽 시트 판넬		6,110,000	611,000	611,000	4,888,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바닥 고급화	텍스처 광폭 강마루	84A	530,000	53,000	53,000	424,000	-	
		84B	540,000	54,000	54,000	432,000	-	
		101	650,000	65,000	65,000	520,000	-	
현관 고급화	스탠다드	3연동 현관중문+현관 시트판넬	84A	1,240,000	124,000	124,000	992,000	-
			84B	1,320,000	132,000	132,000	1,056,000	-
			101	1,320,000	132,000	132,000	1,056,000	-
	프리미엄	쇼케이스 신발장+3연동 자동 현관중문+현관 시트판넬	84A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
			84B	3,180,000	318,000	318,000	2,544,000	-
			101	3,230,000	323,000	323,000	2,584,000	-
욕실 고급화	스탠다드	욕실1_외산타일(600*600)+E-STONE 젠다이벽, 욕조 측면벽 +고급형 수전, 도기, 액세서리 욕실2_외산타일(600*600)+E-STONE 젠다이벽 +고급형 수전, 도기, 액세서리+컬러프레임 샤워부스	84A	6,010,000	601,000	601,000	4,808,000	-
			84B	6,010,000	601,000	601,000	4,808,000	-
			101	6,030,000	603,000	603,000	4,824,000	-
	프리미엄	욕실1_유럽산타일(600*1,200)+E-STONE(베인금) 젠다이벽, 욕조 측면벽+외산 수전, 도기 욕실2_유럽산타일(600*1,200)+E-STONE(베인금) 젠다이벽 +외산 수전, 도기, 고급형 액세서리+컬러프레임 샤워부스	84A	21,070,000	2,107,000	2,107,000	16,856,000	-
			84B	20,590,000	2,059,000	2,059,000	16,472,000	-
			101	21,110,000	2,111,000	2,111,000	16,888,000	-

■ 유상옵션 [가구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시스템 가구	품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7.02.26.	입주시	
벽 판넬형+조명형 선반 (분리형 드레스룸)		84A	2,170,000	217,000	217,000	1,736,000	-
		84B	2,950,000	295,000	295,000	2,360,000	-

고급화			101	3,290,000	329,000	329,000	2,632,000	-
	벽 패널형+조명형 선반 (통합형 드레스룸)		84A	2,690,000	269,000	269,000	2,152,000	-
			84B	2,910,000	291,000	291,000	2,328,000	-
자녀방 불박 이장	침실2 불박이장		84A/B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
			101	1,190,000	119,000	119,000	952,000	-
주방 가구 고급화	스탠 다드	확장형 주방+플랩 상부장, 상/하부 조명 +주방 벽 상판(엔지니어드스톤)+고급형 주방수전	84A	3,080,000	308,000	308,000	2,464,000	-
			84B	2,490,000	249,000	249,000	1,992,000	-
			101	3,040,000	304,000	304,000	2,432,000	-
	확장형 주방+플랩 상부장, 상/하부 조명+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주방공간 확장(주방 레이아웃 변경) +알파룸(슬라이딩도어)+주방 장식장+팬트리+고급형 주방수전		101	4,150,000	415,000	415,000	3,320,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프리 미엄	확장형 주방+플랩 상부장, 상/하부 조명+주방 벽 상판(빅슬랩 세라믹타일)+외산 싱크볼+외산 주방수전+독립형 후드	84A	8,720,000	872,000	872,000	6,976,000	-
			84B	8,030,000	803,000	803,000	6,424,000	-
			101	8,500,000	850,000	850,000	6,800,000	-
확장형 주방+플랩 상부장, 상/하부 조명+주방 벽 상판(빅슬랩 세라믹타일)+외산 싱크볼+외산 주방수전+독립형 후드+주방공간 확장(주방 레이아웃 변경)+알파룸(슬라이딩도어)+주방 유리장식장+팬트리		101	13,820,000	1,382,000	1,382,000	11,056,000	와이드 다이닝 선택시	

■ 유상옵션 [가전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7.02.26.	입주시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전용 수납장 (급배수 포함)	전타입	2,620,000	262,000	262,000	2,096,000	-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원도어 타입(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84A/B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
		101	7,430,000	743,000	743,000	5,944,000	-
	4도어 타입(냉장, 냉동+3도어 김치냉장고)	84A/B	9,080,000	908,000	908,000	7,264,000	-
		101	8,940,000	894,000	894,000	7,152,000	-
인덕션	인덕션 3구	전타입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14인용)	전타입	1,390,000	139,000	139,000	1,112,000	-
전기오븐	전기복합오븐	전타입	970,000	97,000	97,000	776,000	-
스마트 욕실환풍기	스마트 욕실환풍기	전타입	710,000	71,000	71,000	568,000	2개소(욕실1, 욕실2)
현관모니터링	미니월패드	전타입	1,270,000	127,000	127,000	1,016,000	-

미니월패드							
-------	--	--	--	--	--	--	--

■ 유상옵션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392-910014-022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서에 명기)		

- 유상옵션 대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392-910014-02204 예금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유상옵션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유상옵션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단지 여건 및 설계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수상복합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합니다. 다만, 위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BI위치, 중앙부 출입구, 단지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합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녹색 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성능등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다음과 같으며,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인천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따릅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15 1377 2107 146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초등학교(통학구역)</th> <th style="width: 33%;">중학교(중학군)</th> <th style="width: 33%;">고등학교(평준화)</th> </tr> </thead> <tbody> <tr> <td>인천성리초등학교</td> <td>인천 8학교군 내 분산 배치</td> <td>인천 3학교군 내 분산 배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상대보호구역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중학군)	고등학교(평준화)	인천성리초등학교	인천 8학교군 내 분산 배치	인천 3학교군 내 분산 배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중학군)	고등학교(평준화)					
인천성리초등학교	인천 8학교군 내 분산 배치	인천 3학교군 내 분산 배치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발사업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인천성리초이며,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은 84A, 101 주택형(약식표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유상옵션,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유상옵션,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예정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의 도로의 경우 도로종합개선안도를 표현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불일치하며, 추후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 및 영상장비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배수구,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타입 및 옵션별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도기류, 욕실 마감자재 욕실헨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점검구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미건립 주택형의 설비 마감자재 사양은 건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에 따라 제공됩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난간포함),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주방TV, 디지털 도어락 등의 설치위치 및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

구분	내용
	<p>및 개소가 결정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철골 구조물, 옥상장식물, 커튼월록, 조경, 야간조명 등)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건본주택 및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 관련 리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키즈라운지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및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및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급이상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건본주택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현황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환기를 위한 환기구, D/A 등 추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면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지역, 타사 또는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구분	내용
	<p>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수준 성능 또는 동급 수준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사업지 및 주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와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과 연결되는 접근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롯데백화점 철거로 인해 기존 출입구를 대체하기 위한 동선으로 중앙출입구(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및 일부 승강기를 24시간 개방하여 건물 내부에서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이용방법, 운영시간, 연결동선 및 시설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술회관역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의 관리주체는 시행위탁자와 인천교통공사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에는 인천교통공사가 관리 및 운영, 유지관리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사업지에는 등기부등본상(2003년 01월 07일 접수 제1051호) 인천교통공사가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지하시설물(연결통로)의 설치·유지를 위한 권리로서, 지상의 시설물 부존재를 확인하고, 지하시설물(연결통로)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1항 3호 나목에 따라 지상권 사용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후 지상부위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보행통로로 사용 예정이며 추후 지상권설정 면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출입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를 통해 지하 2층~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며, 해당 출입구는 외부인에게 상시 개방됩니다. ■ 단지 동서측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외부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시설입니다. ■ 단지 남,북쪽에 공개공지(오픈스페이스)가 설치되며, 외부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시설입니다. ■ 단지 서측 예술로(25m) 보도에 지하철 환기를 위한 환풍구가 설치예정이며, 소음 및 통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공원, 완충녹지, 도로,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근린생활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현황(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 (인접 APT단지, 인접주택단지 (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종교시설 (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 외부도로 등) 에 의한 사항 및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구분	내용
	<p>주변시설 (도시계획 시설포함) 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측량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경계(분할) 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판매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승인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 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세대 내부 덕트 면적은 분양면적에서 제외되며,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보증기간 내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구간의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만·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에 따른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경계와 기부채납 부지 또는 외부와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물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이에 대한 추가 시설물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시설물, 건물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아파트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구역 외 도로 설치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녹지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구분	내용
	<p>변경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물 또는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 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조경시설물, 야간조명 및 외벽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주차통합시스템, 시음성인식스위치의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본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은 부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사항이 상이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보도의 선형, 재질, 경사, 레벨, 단차 등은 당 사업지와 무관하며 계약전 반드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이후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협의 및 사업시행(경미한)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및 개요, 마감재, 조경 등의 일부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동일한 사양으로 설치되는 창호 및 입면분할창 특성상 이사 시 사다리차 운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사인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및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인접세대 등으로 인해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개방되는 중앙출입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의 설치로 인해 일부 인접세대에 소음, 야간조명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공원,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진동, 수증기, 매연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상세설계에 의하여 위치/크기/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예술로(25m)변 가각부에 지하주차장 급기(환기구)를 위한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됩니다. - 일부 동 옥상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방설비(수조 등)가 설치되며 동작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옥외엘리베이터, 옥외계단,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미세한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사항으로 최종 위치/크기/형태 등은 상세계획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에 인접한 동에서는 소음, 일조·냄새·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지하 2층~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지하 1층으로는 운동시설이 배치되며, 지하 1층 및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됩니다. 또한, 지상 5층부터 지상 33층(103동, 104동) 및 지상 39층(101동, 102동)은 공동주택으로 구성됩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보행로, 연결녹지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에 따라 실 시공사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청약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진입부의 조경시설물은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구조, 재질, 상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일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에 따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지상 및 옥상층의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출입구의 진출입로 개소는 인허가 협의과정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 보행통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며 외부인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외부인 출입 및 통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가스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103동 북측에 맨홀 또는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101동과 104동 사이에 맨홀이 설치 되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결송수관 시설이 101동 서측, 102동 남측, 103동 남서측에, 104동 북측에 설치되고, 상수도 소화전이 101동 북서쪽, 103동 동쪽에 설치되고, 옥외소화전이 101동 남쪽과 북쪽에, 102동 서쪽과 남쪽, 북동쪽에, 103동 남서쪽과 북쪽에, 104동 서쪽과 동쪽, 북쪽에 설치되며, 자세한 것은 모형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형태, 수량 등은 관할 서와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측면 및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모형과 카탈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해 있는 저층부 일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및 분리수거장은 수거차량의 진출입 및 수거작업이 가능한 곳으로 확보 되어야 함으로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공중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후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주동 / 공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향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 옥상구조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중앙출입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구분	내용
	<p>빛공해 및 소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램프/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급배기 및 제연환풍/우수조/쓰레기집하시설/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주방배기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수증기, 매연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상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커튼월록 유리, 중앙 파빌리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소화수조(101동, 102동, 103동, 104동 피난안전층과 옥상)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외부마감(커튼월록, 금속제 등)으로 인해 외부 창호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전기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바랍니다. ■ 청약자는 단지 커뮤니티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층별 공용부분은 입주민 공동의 사용을 위한 공간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당 현장 옥상 상부와 아파트 주동 외벽에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 주동 외벽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형태, 디자인, 수량에 따라 입면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차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랜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트랜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에폭시코팅 및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트랜치커버는 측면만 시공)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을 시공부위에 천장들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널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과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ALC벽체, 콘크리트벽체 등)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천장 마감 레벨까지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0mm 내외로 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는 각동 코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제조사 기준으로 시공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입이 MRL(기계실 없는 타입)에서 MR(기계실 있는 타입)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에 따라 옥탑 및 옥탑 상부의 인명구조공간 높이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상도코팅은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 상가 실외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구분	내용
	<p>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 제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의 주차대수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주차를 포함하여 1,020대이며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1.35대(672대)입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기준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 벽체 구획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 4층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하 5~6층, 지하 4층 일부이며, 지하 4층은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주차장과 차단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차량 높이가 주차장 차로 높이 미만이라도 차로 높이에 근접한 차량은 길이·적재량 및 경사로 진출입 각도에 따라 차량 진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 3층은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전용주차장이며, 해당층의 아파트 동출입문은 여닫이문이 설치됩니다. ■ 지하 3층에는 통학차량 정차공간(Drop off zone)이 설치됩니다. ■ 지하 2층은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층으로 지하철과 연결되며, 해당층의 아파트 동출입문은 여닫이문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램프계획으로 인해 지하 1층에서 102동, 103동 아파트 동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이용은 지하 1층~지하 2층 전용계단 및 중앙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계단을 통해 다른 층을 경유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전용 부대복리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통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러, PC, 철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경관/건축위원회 등의 인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골조난간 및 철제난간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난안전구역이 101동·102동 지상 21층, 103동·104동 지상 16층에 계획되며, 동일 층에 각종 설비가 계획되므로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 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출입구에는 외부 진입로와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단이나 경사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 및 전기 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허가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검사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보안 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 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p>※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안테나 - 지상층 2. 중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5층 EPS/TPS (2개소) - 지하2층 EPS/TPS (2개소) - 지상2층 EPS/TPS (2개소) - 지상8층 EPS/TPS (4개소) - 지상17층 EPS/TPS (2개소) - 지상18층 EPS/TPS (2개소) - 지상26층 EPS/TPS (2개소) - 지상28층 EPS/TPS (2개소) - 지상35층 EPS/TPS (2개소) <p>※ 송/수신 안테나의 설치위치 및 서비스방향 등은 전파수신강도 및 시설환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중계장치의 설치위치는 현장 상황 및 시설환경 등에 따라 협의된 장소 내에서 조정 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1층 : 헬륨(4개소), 지하2층 : 헬륨(5개소), 지하3층 : 헬륨(5개소), 지하4층 : 헬륨(4개소), 지하5층 : 헬륨(4개소), 지하6층 : 헬륨(4개소) <p>※ 추후 지상층 이동통신 전파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단형 안테나의 추가 설비가 현장 협의하에 설비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 PAD, 전주, 통신 전주,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 이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폭 확대 및 보행로 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 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102동 외벽에 커튼월록이 설치되는 일부 구간은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신재생 에너지인 BIPV(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수량, 사양, 색상 등은 본 공사를 진행하면서 확정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시공된 건물의 외피가 모형 및 분양홍보물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우수 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차장 기둥에 소화전 설치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엘리베이터 홀 높이는 시공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필로티 천장고는 시공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사용(주차장, 필로티, PIT층 등)에 따른 전기료 등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층 기계실의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전기방열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전기방열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및 배관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관이 노출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정화조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됨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주차 위치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APP 활성화 후 위치 저장 버튼을 작동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10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됨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오티(기본) / AI음성인식 스위치(유상)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기본) / AI음성인식 스위치(유상)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기본) / AI음성인식 스위치(유상)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Hi-oT 서비스와 제휴된 IoT 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 및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 하이오티(기본) / AI음성인식 스위치(유상)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 주차통합관리시스템 / 원패스 시스템 등은 무상제공기간 이후 요금부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유료 서비스 미전환 시 사용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모니터링 미니월패드(유상) 선택 시 세대 현관 앞에 CCTV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 입주민 이동 시 일부 촬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세대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 화각 조정에 의한 영상감시 범위가 협소해 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 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합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 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공 시 세대 환기구는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크기, 디자인, 위치, 개소가 결정됩니다. ■ 각 실 환기설비는 실외기실(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노출로 설치될 예정이며(마감에 따라 위치 변경 가능), 미관 저해 및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또는 팬트리) 환기는 세대별 환기설비와 연동되며 별도의 컨트롤러는 미제공됩니다. ■ 각 세대별 환기설비의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류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타일류 등의(유상옵션 포함)의 패턴은 제품 특성상 무늬가 연속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라믹타일(유상옵션)은 본 공사 시 운반 및 품질확보를 위해 분절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세탁실)에서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적재 설치할 경우 창호개폐 또는 선반수납, 보일러의 유지관리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 유리의 규격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5층~21층 세대 내부에 소방관 진입창호가 설치되며 해당 창호는 개폐할 수 없는 고정창호입니다. <p>※ 소방관 진입창호 설치 예정 위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84A : 하향식피난구 (22층 이상 세대부터는 미서기창으로 변경됨) 2. 84B : 침실1 측벽 (22층 이상 세대부터는 창호가 미설치됨) 3. 101 : 하향식피난구 (22층 이상 세대부터는 미서기창으로 변경됨) <p>- 소방관 진입창 전면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가 금지되오니, 이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각 제조사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스위치(전자식 스위치)와 온도조절기는 타입별로 디자인, 규격, 위치, 개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방의 조명기구의 위치는 안방장(불박이장 등)설치를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등기구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에 설치된 분전반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사용상 귀책 사유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시공사와 무관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 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류의 사양(개폐 방식 및 손잡이 디테일, 휠라 사이즈 및 위치,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개별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상이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양변기 및 세면기 하부)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바닥 타일시공에 따른 타일 자재 특성상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내 오배수배관은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 될 예정이며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에 면해 있는 인접실의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욕실 천장이 SMC천장인 경우 타일여장 및 몰탈여장을 시공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과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 온수 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주방 하부장 등 바닥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 및 보일러 등의 가동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실외기실 및 보일러 설치공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감지기 및 환기구(급/배기용)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 입상 배관이 외부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외기실,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 등)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도기, 수전 및 액세서리류 및 욕실팬) 및 유상옵션인 스마트 욕실 환풍기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됩니다.(가스보일러는 발코니(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실 보일러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각 세대별 세탁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거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관 및 덕트 설치로 인해 커튼박스의 깊이나 길이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주방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되어 가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등 전기쿡탑 선택 시, 주방 내 가스배관은 미제공됩니다.(다용도실 등 가스미터기에서 마감) ■ 하향식 피난 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경우 설치 위치 및 형태가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 평면 유형별,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가 전개될 수 있도록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항시 하향식 피난구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철제방화문(현관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하부실,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외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 및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 전기, 가스 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 벽체, 욕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 가구 내부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반침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등)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한 단차 시공이 계획되어있으며, 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차의 높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쪽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 및 그 외 철재/PD도어류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리의 단열 등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손잡이의 위치는 세대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 주방TV는 본 공사 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자동식소화기 제어기 등의 설치 등으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차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일부 유상옵션품목은 타입별로 선택 불가한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행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리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하부,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가 침실 또는 거실에 면한 발코니에 설치되어 실외기 가동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벽체 은폐부위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배면 마감제외, 하단부 모르타르외 마감없음)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됨. 안전을 고려한 설계이므로 설치 위치 및 작동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또는 슬라이딩도어(유상옵션 품목)는 실내 창호로서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조상 모헤어 또는 가스켓이 설치되나, 틈새를 통한 누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또는 슬라이딩 도어와 만나는 벽체, 천장, 가구 등은 본공사 시 사이즈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합니다.)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천장 높이는 설비자재와의 간섭 등으로 실 시공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제공되며,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및 색채, 마감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통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내 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보육 정책 변화, 지역 내 보육 수요 및 공급 여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국공립 또는 사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도서,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천정속 공간에는 설비배관 및 덕트가 설치 되고, 천장고는 시공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시설 이용객의 출입 및 유동 인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 운영에 따라 소음, 조명, 냄새, 차량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종 및 운영시간은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의 출입으로 단지 출입 동선 및 공용공간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련 간판, 환기시설, 배기시설,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이용 및 차량 진출입 동선이 공동으로 사용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디자인, 출입구 위치, 시설 구성 및 면적 등은 인허가 및 설계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점포에는 급수배관이 임의 위치에 설치되며(출입구 1M 이내), 급수배관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밸브마감 처리하며 밸브 이후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 각 점포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공용부분 발생하는 급수요금은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각 실별 요금 분개 관리해야 합니다. ■ 각 점포에는 배수배관이 임의 위치에 바닥 배관 후 배관 캡까지만 설치(별도의 배수구 미설치)되며, 배관 노출로 일부 공간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실 내부의 배수 연결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시공 해야 합니다. ■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 등을 설치(입주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에는 별도의 온수배관이 없으므로 필요시 계약자가 별도로 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 입점시 주방배기용 설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점포별 주방 설치에 따른 연기 배출 시설 및 덕트 공사 시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에 소음전달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취사를 위한 열원은 LNG(액화천연가스)이며 상가외부 주배관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주배관 이후 상가 외벽 및 내부 배관,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상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점포 천장속에는 공동사용을 위한 설비 배관 및 가스 배관(입점자 설치) 등의 시설물이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 금지해야 합니다. ■ 일부 점포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의 증감,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복도 등)에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합니다.

11 기타 안내 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주택법」 제48조의2 및「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 절차**
 - 계약자는 공급금액 및 연체료 등 일체의 납부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요구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예치금(선수관리비)을 생활지원센터에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 잔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에는 입주증발급일

또는 키 수령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 계약자는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부분준공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서 표제부의 공급금액 총액의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하고, 나머지 10%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해당 기간 내 나머지 10%의 금액을 미 납부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 제5조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계약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등 법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본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30년 10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전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주민운동시설 1개소(피트니스), 클럽하우스 1개소, 키즈라운지 1개소, 관리사무소 1개소, 경비실 1개소, 학부모대기공간 1개소 등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내진 I 등급 (VII - 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3층(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전용주차장)	3.0m	3.0m
지하4층(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3.0m	3.0m
지하5층(아파트 전용주차장)	2.3m	2.3m
지하6층(아파트 전용주차장)	2.3m	2.3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포함)
건축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 6,027,859,090
소방	금정엔지니어링(주)	₩ 1,344,288,293
전기	(주)진일기술단	₩ 1,302,520,000
정보통신	(주)이룸이앤씨	₩ 770,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164, 2층 305호(보정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34511-0391041	110111-2153015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주)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대출금융기관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시행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주)와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수탁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주)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5.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6.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7. 본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제 01292026-101-0002000호	₩293,111,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 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하자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열관류율[W/m²K] : 0.834 내측, 외측 : 5CL+12Air+5LE
창의 기밀성능(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열관류율[W/m²K] : 0.834 내측, 외측 : 5CL+12Air+5LE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단열조치를 준수 단열재(경질우레탄폼)지붕, 벽체, 바닥 사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0.7KW이상의 헐용 전동기 "고효율 전동기"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 변압기로 정한 제품을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